임금피크제 운영규칙

제정 2013. 8. 21 개정 2014. 8. 28 개정 2015. 8. 20 개정 2016. 1. 29 개정 2016. 2. 17 개정 2016. 12. 29 개정 2018. 12. 27 개정 2022. 8. 17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33조에 따른 임금피크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고용안정 및 조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모든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련 법규 또는 별도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원과 공무직은 제외한다.<개정 2018.12.27.>
- 제3조(임금피크제의 적용시점) ① 임금피크제는 직원이 인사규정 제35조에 의한 정년이 달하는 날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이 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 ② <삭제 2016.1.29.>
- 제4조(임금의 조정) ①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게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1년간의 월봉, 직무급 및 출납수당의 누적 합계액에 매년 기본 인상률을 반영한 후 [별표 제1호]에 따른 연차별임금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봉을 지급한다.
 - ② 제수당 및 성과급은 일반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되,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임금지급률에 의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6.12.29.>
 - ③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잉여금은 신규직원 채용 인건비로 우선 사용한다. 단, 신규직원 채용 인건비 충당비율이 부족할 경우에는 육아휴직자 등 일반직원의 인건비 잉여금을

활용하여 충당한다. <신설 2016.12.29.>

제5조(퇴직금 중간정산)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의 조정이 시작되기 직전부터 매 연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임금 감액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6조(계약직 전환) <삭제 2015.8.20.>

- 제7조(직위해제 및 직무조정) ①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이 보직에 있는 경우 그 직위를 해제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적합 직무 중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8.28., 2015.8.20., 2016.1.29.>
 - 1. 내·외부 전문분야 강의
 - 2. 내·외부 인증·심사·자문
 - 3. 그 외 원장이 정한 직무<개정 2016.1.29.>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은 유관기관 등으로의 파견을 명하거나 그간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요원 등의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8.28., 2015.8.20.>
- 제8조(복무) ①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에도 대상 직원에 대하여는 진흥원 관련규정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계약기간에 포함되며 그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 ③ 임금피크제 3년차 직원에게는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3년간 임금감급률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8.17.>
- 제9조(복리후생 등) 직원에게 제공되는 각종 복리후생 제도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제10조(성과평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성과 평가에 의한 등급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원의 평균 등급을 적용한다.<개정 2015.8.20.>

제11조(퇴직지원 프로그램) 임금피크제 3년차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 후의 인생설계, 여가, 건강 등 노후 문제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 퇴직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공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8.17.>

제12조(기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은 본 규칙 및 다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신설 2014.8.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금피크제 적용시점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정년이 달하는 날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이내에 해당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8.28.>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8.20.>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9.>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17.>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9.>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7.>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8.17.>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개정 2016.02.17>

연차별 임금지급률

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정년)
지급률	95%	85%	70%

연 봉 계 약 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와 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 1. 연 봉 액 : 원
- 2. 계약기간 : ~
- 3. 지급방법 : 급여규정 및 급여지급규칙에 의함.
- 4. 기타:
 - 상기 연봉액 이외에 수당 및 성과급 등을 별도로 차등지급할 수 있음.
 - 계약기간 중 징계 등에 의한 계약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변경 없이 해당규정에 따름.
 - 상기 연봉액을 타인에게 공표하는 등 연봉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함.
- 위 당사자는 자유의사로서 위와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상호 확인한다.

20 . . .

대 표 자: (인)

법 인 명:

주 소:

근로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상기 연봉액에는 연구활동비, 중식보조비, 차량보조비(신청자에 한함) 및 보육수당이 포함됨